

# 독일강점기 베네룩스 3국의 대독협력과 해방 후의 부역자 숙청\*

이용우 | 서울대학교 강사

---

베네룩스 3국에 대한 나치 독일의 지배구조는 공식적으로 모두 '직접통치' 형태였지만 실상은 상당 정도로 각국의 기존 행정기구에 의존했다. 나치 독일로서는 해당국 자체의 기존 행정기구를 활용하는 편이 완전한 직접통치에 비해 비용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훨씬 유리하고 주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것이었다. 점령정책의 추이는 세 나라 모두 비교적 온건하고 관대한 통치방식에서 강압적이고 노골적인 지배형태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점령당국은 점점 더 해당국의 친나치-파시스트 세력의 협력에 의존하면서 이들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는데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은 이들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권력을 주지는 않았다. 점령당국은 이들보다는 기존 정치세력과 경제 엘리트들에게 의존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는 곧 친나치-파시스트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이 가장 눈에 띄는 협력이기는 했지만 나치 독일의 지배와 수탈을 순탄하게 유지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결국 그러한 세력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경제세력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세 나라 모두 해방 후에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이 진행되었는데 인근 프랑스와 달리 대규모의 약식처형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독협력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면에서는 이 나라들이, 강도 높은 숙청 사례로 유명한 프랑스보다도 더 철저하고 엄격했다. 대독협력자 숙청이 언제나 공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숙청 과정에서 나타난 몇몇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큰 사법처리 물결과 사회 각 부문에서의 자체 숙청 물결을 통해 수치스러운 과거사에 대한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제어: 베네룩스 3국, 대독협력, 나치 독일, 부역자 숙청

---

\* 이 논문은 2007년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학술연구용역비로 연구되었음.

## I. 머리말

현재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모범적인 외국 사례로 종종 논의되는 것이 프랑스의 독일강점기 협력행위 청산 사례인데 사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독일에 점령당하고 따라서 해방 후에 협력에 대한 청산 문제가 제기된 나라는 비단 프랑스만이 아니었다. 실로,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유럽 지역은 ‘나치 독일 지배하의 유럽’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닐 만한 상황이 되었다. 유럽 대륙에서 단 네 나라, 즉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독일군에 영토 전체 혹은 일부를 점령당하거나 사실상 독일의 위성국이 되었다. 독일이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은 나라별로 매우 다양했다. 오스트리아처럼 ‘독일 제국’에 아예 합병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폴란드나 노르웨이처럼 독일 민간정부가 들어선 나라와 벨기에처럼 독일 군당국이 통치한 나라도 있었고 덴마크, 세르비아처럼 자국 정부가 존속하면서 점령당국의 통제를 받는 경우, 그리고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처럼 사실상 위성국이 된 나라들도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처럼 하나의 나라가 군당국의 직접통치를 받는 지역(북부)과 자국 정부가 통제를 받는 지역(비시 프랑스), 그리고 합병된 지역(알자스-로렌)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프랑스 인근의 작은 세 나라인 베네룩스 3국, 즉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의 강점기 대독협력과 전후(戰後) 과거청산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세 나라는 모두 1940년 5월 10일 나치 독일의 급작스런 전격 침공으로 무너져 4~5년간 점령당했고 세 나라 모두 자국 정부가 런던으로 가 망명정부 역할을 했다. 또한 세 나라 모두 중립국이었음에도 침공당했다는 점과 강점기에 독일 점령당국의 직접통치를 받았다는 점까지 동일했다. 그럼에도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 역시 컸다. 직접통치를 받았다는 점은 같았지만 벨기에는 점령군 당국의 통치를 받았던 반면 네덜란드에는 독일 민간당국이 들어섰고 룩셈부르크는 아예 합병되었던 것

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여왕과 룩셈부르크의 대공녀는 침공 직후 정부와 함께 망명을 떠났던 반면, 벨기에의 국왕은 국내에 남았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세 나라 각각에서 나치 독일이 어떠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통해 피점령국 주민들을 통치했고 이들에 대해 어떠한 점령 정책을 폈는지를 볼 것이고, 제3장에서는 이 나라들에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정도와 규모로 점령당국에 협력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1944년 9월 이후, 네덜란드는 1945년 5월 이후 각각 해방되고 나서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II. 나치 독일의 지배구조와 점령정책

### 1. 네덜란드

1940년 5월 10일 나치 독일의 급작스런 침공은 정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네덜란드인들에게 특히 충격적이고 끔찍스런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1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선언해 전화(戰禍)를 면했고 2차 대전 발발 이전에도 계속해서 중립노선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1940년 5월의 침공은 더더욱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전투는 비교적 일찍 끝났다. 5월 15일 네덜란드 군대의 총사령관이 항복문서에 조인했다. 전투기간은 짧았지만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닷새 동안 2,559명의 민간인과 2,067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게다가 게슈타포의 체포를 두려워한 유대인 150명이 자살했다.

군대는 항복했지만 군주와 정부는 망명을 택했다. 빌헬미나(Wilhelmina) 여왕은 5월 13일,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영국으로 떠났고 몇 시간 뒤 총리와 장관들도 여왕을 따랐다. 각 부 장관들은 해당 부처의 총서기(차관급)들에게 국내에서 업무를 계속 볼 것을 지시했다.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독일강점기 내내 런던에서 망명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 정부는 나치 독일에 의해 이미 파기된 중립노선을 버리고 연합국 편에 서서 독일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Hirschfeld, 1988)

한편, 나치 독일은 네덜란드에 대해 군정을 실시하지도, 합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국내에 남은 총서기들이 이끄는 행정기구를 네덜란드 정부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처음에 독일 점령군은 군정실시를 원했으나 결국 히틀러 자신의 결정으로 민간 행정부가 들어섰다. 공식명칭은 “점령지역 네덜란드 담당 제국위원”(이하 제국위원, Reichskommissar für die besetzten niederländischen Gebiete)으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나치당원인 아르투어 자이스-인크바르트(Arthur Seyß-Inquart)가 그 직위에 올랐다. ‘제국위원’의 법적 지위는 1940년 5월 18일의 ‘총통 포고령’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히틀러 총통에 직속된 직위였다. 제국위원 밑에는 4명의 ‘총위원’(Generalkommissare)을 두었다. ‘행정-법무 총위원’, ‘재정-경제 총위원’, ‘공안문제담당 총위원’, ‘특별업무담당 총위원’, 이렇게 4명의 총위원이 해당 부문의 네덜란드 행정을 지휘, 감독했다. 이 가운데 ‘특별업무담당 총위원’은 선전과 비경제조직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Hirschfeld, 1988; Eismann et Martens, 2007)

하지만 독일 행정관료들이 각 부 총서기를 필두로 한 기존의 네덜란드 행정기구를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되는 중앙정부만 없을 뿐이지, 네덜란드인들의 행정기구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고 단지 이 4명의 총위원이 관할부처의 행정을 총지휘하고 통제, 감독한 것이었다.

또한 제국위원 체제는 이 4명의 총위원 외에 총위원과 동급의 직위로 독일 외무부의 파견대표와, 지방행정을 담당할 ‘전권(全權)위원’(Beauftragte)을 두었다. 전권위원은 모두 13명으로, 네덜란드의 전국 11개 주와 두 대도시인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의 지방행정을 각각 담당했다.

이렇듯 제국위원 체제는 네덜란드의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모두를 아우르는 구조였지만 그 정점에 있는 제국위원 자이스-인크바르트가 네덜란드에 대한 지배권을 온전히 장악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점기 네덜란드는 제국위원 정부만이 아니라 독일의 나치당, 친위대, 외무부, 경제부, 선전부 등이 끊임없이 개입하고 지배권과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장이었

다. 공안문제담당 총위원 한스 라우터(Hanns Rauter)는 직속상관인 자이스-인크바르트가 아니라 종종 독일의 친위대 총사령관 하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고, 특별업무담당 총위원은 선전 문제를 놓고 독일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가 파견한 대표와 경쟁을 벌였다.

한편, 네덜란드에 군정이 실시되지 않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것은 같은 ‘게르만족’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게르만족 국가에 대한 나치 독일의 ‘우대’는 강점기 초기에 자이스-인크바르트가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자체 나치화’ 작업을 유도한 것으로도 표현되었다. ‘자체 나치화’ 정책이란, 네덜란드의 각 사회부문단체들에 나치 조직 모델을 부과하여 재편하고 지방행정부문도 시장(市長)들과 주(州)위원(주의회 의장이자 주지사에 해당)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강력한 ‘지도원칙’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했다. 점령당국이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체 나치화를 유도하고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펴던 국면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41년 2월말 유대인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조치에 맞서 암스테르담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항의파업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점령당국의 정책은 갈수록 강압적이 되어갔다. 정치재판소들이 설치되고, 유대인의 대규모 강제이송이 시작되고 정치범에 대한 사형선고와 인질에 대한 총살이 갈수록 빈번해졌다. 1943년 3월부터 시작된 점령정책의 세 번째 국면에서는 각종 독일 기구들 간의 경쟁이 친위대의 승리로 끝나고 아울러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이 패퇴하고 레지스탕스 활동이 거세짐에 따라 네덜란드 주민에 대한 억압과 수탈의 정도가 더욱 극에 달하는 양상을 띠었다.(Hirschfeld, 1988; Durand, 1990)

5년간의 점령이 네덜란드 국민에게 입힌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1946년에 발표된 공식통계에 따르면 1940~45년에 점령당국에 의해 사형선고 받고 처형당한 이가 2,800명이었고, 독일의 강제수용소와 감옥에서 사망한 이(유대인 제외)가 약 2만 명, 네덜란드 수용소에서의 사망자가 600명이었다. 또한 모두 14만 명의 노동자가 독일의 공장들로 끌려가야 했다. 가장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것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었다. 총 14만 명 가운데 10만 명, 즉 서유럽의 어느 피점령국보다도 높고 나치 독일 자체보다도

높은 비율(71.4%)의 유대인이 수용소에 끌려가 학살당했던 것이다 (Hirschfeld, 1988; Durand, 1990; Auschwitz, 1998).

## 2. 벨기에

벨기에 역시 2차 대전 발발 전부터 중립을 표명해 왔지만 네덜란드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가 침공당한 바로 그날인 1940년 5월 10일 벨기에 역시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고, 네덜란드 군대보다는 좀더 오래 버텼지만 벨기에 군대도 결국 5월 28일에 독일군에 항복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여왕과 정부 모두 영국행과 망명정부 구성을 택했던 반면 벨기에에는 보다 혼란스럽고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벨기에의 장관들은 5월 16일 브뤼셀을 떠나 프랑스로 갔던 반면 국왕인 레오폴드 3세(Leopold III)는 출국을 거부하고 끝까지 국내에 남았던 것이다. 독일군에 휴전을 요구하고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도 국왕 자신이었다. 단, 국가원수로서의 서명이 아니라 벨기에 군대 통수권자로서 한 서명이었다. 프랑스로 갔던 장관들은 프랑스 군대 역시 독일군에 패배하자 벨기에로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독일군 당국 측의 거부로 결국 몇 달 뒤 일부 장관들이 런던에서 망명정부를 구성했다 (1940년 10월).

나치 독일은 네덜란드의 경우와 달리 벨기에에 대해서는 군정을 실시했다. 5월 31일 독일 육군총사령부는 알렉산더 폰 팔켄하우젠(Alexander von Falkenhausen) 장군을 “벨기에 북부 프랑스 군사령관”(Militärbefehlshaber in Belgien und Nordfrankreich)으로 임명했다. 명칭에서 보듯이 폰 팔켄하우젠은 벨기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최북단 2개 도인 노르(Nord) 도와 파드칼레(Pas-de-Calais) 도도 관할하게 되었다. 육군총사령부의 6월 1일 명령에 따르면 ‘벨기에 북부 프랑스 군사령관’의 임무는 “점령지에서 조속히 상황을 다시 정상화하도록 하고 그 지역의 자원을 국방군(독일 정규군)과 독일 전시 경제를 위해 최대한 강도 높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점령지역 최고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질서유지와 자원수탈이었던 것이다.

이 군사령관의 휘하에서 점령군 자체에 대한 행정은 ‘사령부 참모진’(Kommandostab)이, 점령지 민간행정은 ‘군정청 참모부’(Militärverwaltungsstab)가 각각 담당했다. 벨기에 주민에 대한 통치는 바로 이 군정청의 장(長)(Militärverwaltungschef)인 레더(Eggert Reeder) 장군이 이끌었다. 하지만 벨기에에 대한 나치 독일의 지배는 네덜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점령당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힘러의 친위대, 나치당, 독일 정부의 외무부, 괴벨스의 선전부 등이 끊임없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또한 역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벨기에인들의 기존 행정기구도 유지되었다. 네덜란드와 똑같이 각 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직위인 총서기들이 벨기에 행정부를 이끌었는데 이들은 1940년 6월 12일 레더 장군의 군정청과 공식 협정을 맺기까지 했다. 이 협정에 따라 벨기에인들의 행정 기능은 유지되었지만 어디까지나 독일 군정청의 통제권 행사를 전제로 용인된 것이었다.

벨기에가 네덜란드와 달랐던 점은 국왕의 존재였다. 네덜란드의 빌헬미나 여왕이 런던에 가 연합국 지지와 항독선언을 했던 반면, 레오폴드 3세는 자진해서 ‘포로’로 국내에 남았던 것이다. 하지만 국왕은 자신의 공식적 지위인 ‘포로’ 신분에 머물고자 하지 않았다. 레오폴드 3세는 총서기들을 통솔할 1명의 ‘행정총위원’을 임명하자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고, 자신의 측근을 ‘외무부 총서기’로 임명하려 하기도 했지만 독일 점령당국은 모두 거부했다. 점령당국은 총서기들과 협상하는 데에는 전혀 거리낌 없었지만 국왕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철저히 반대했던 것이다. 사실, 벨기에에는 네덜란드어권 플라망 지방과 불어권 왈론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나치 독일로서는 벨기에 국왕이 이 두 지방을 한데 묶는, 벨기에 국권 회복의 구심점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점령당국이 벨기에 국왕의 정치활동을 철저히 금지시켰던 것은 그 나라에 대한 ‘분할지배전략’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Wijngaert, 2006; Durand, 1990).

기실, 벨기에가 역사적, 전통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나치 독일이 지배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점령당국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같은 게르만족’으로 간주된 플라망 지역

주민을 우대했던 반면, 불어권 왈롱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벨기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저항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Gordon, 1998; Durand, 1990).

한편, 점령정책의 성격이 초기의 비교적 관대했던 국면에서 갈수록 억압적이고 강경해지는 국면으로 바뀌는 것은 앞서 본 네덜란드 사례와 유사했다. 단지 초기의 유화국면이 1940년 9월까지로, 네덜란드보다 더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해 말부터는 벨기에의 각종 원료와 공산품에 대한 수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강점기 4년 동안 모두 25만 명의 벨기에 노동자가 독일 공장들로 강제로 끌려갔다(Gordon, 1998; Rousso, 1987; Warmbrunn, 1993).

1944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뒤 레오폴드 3세는 퇴각하는 독일군에 의해 독일로 끌려갔고 아울러 벨기에에 대한 지배형태도 군정에서 민정으로 바뀌었다. 즉, 1944년 7월 18일에 점령당국은 네덜란드처럼 “(벨기에-북부 프랑스) 제국위원”이 이끄는 민간정부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체제가 9월 초 연합군에 의한 벨기에 해방 때까지 마지막 한 달 반 동안 작동했다(Wijngaert, 2006; Eismann et Martens, 2007).

### 3.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역시 1940년 5월 10일의 침공 이후 독일군에 점령당했고 앞의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런던에서 망명정부가 구성되었다. 대공녀 샬롯(Charlotte)은 런던을 거쳐 캐나다의 몬트리올로 갔다. 국내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5월 16일에 하원에 의해 창설된 ‘행정위원회’가 담당했다. 정부 총서기가 주재하고 각 부의 최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구였다. 이 기구는 그해 말까지 존속했지만 독일군 당국은 룩셈부르크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Fletcher, 1970; Trausch, 1992; Kreins, 1996).

룩셈부르크에 대한 나치 독일의 지배형태는 벨기에와 같은 군정도, 네덜란드와 같은 민간정부도 아니었다. 첫 세 달간은 벨기에-북부 프랑스 군사령관인 폰 팔켄하우젠이 룩셈부르크까지 관할했지만 결국 이 작은 나라에 대해서

는 ‘합병’이 결정되었다. 7월 29일 코블렌츠(Koblenz) 대관구장 구스타프 지문(Gustav Simon)이 룩셈부르크의 ‘민정청장’(Chef der Zivilverwaltung)으로 임명되었다. 동부 프랑스의 독일접경지역인 알자스와 로렌이 독일에 합병되면서 각기 다른 대관구장들의 관할지구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합병’을 위해 점령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언어에 대한 것이었다. 1940년 8월 6일 명령에 따라 모든 행정문서와 사법문서를 독일어로만 쓸 것이 포고되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신문, 잡지, 서적과 광고문, 공지문, 벽보도 독일어 전용이 명시되었고, 모든 상점과 기업의 상호명, 모든 거리 이름과 도로표지판까지 독일어 전용이 의무화되었다. 프랑스어 과목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사라졌고 중등학교에서도 대폭 축소되었다. 1941년 1월부터는 성명(姓名)까지 독일어식으로 고칠 것이 포고되었다.

언어를 통한 동화정책이 추진된 데 이어 기존의 국가기구들이 해체되었다. 국가참사원(Conseil d'État)과 하원이 해산되었고, 1940년 12월에는 행정위원회까지 해체되었다. 또한 친독기구인 ‘재외독일인운동’(Volksdeutsche Bewegung, VdB)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그 부속단체들도 해산되었다. 선출직이었던 시장과 시의원은 임명직으로 바뀌었고, 점령당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공무원들은 대거 해직되었다(약 6,000명). 많은 수의 독일 공무원들이 룩셈부르크 행정기구의 공석을 채우거나 요직에 임용되었다(Fletcher, 1970; Trausch, 1992).

합병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동화정책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41년 10월 10일 민정청장 지문은 룩셈부르크 주민들을 상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법적 국적, 모국어, 소속 민족을 적게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95%)이 독일/독일어/게르만족이 아니라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어/룩셈부르크인이라고 답했던 것이다. 점령당국은 낙담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동화’를 추진했다. 1942년 8월 30일 만 18-22세 청년들을 독일군으로 징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다음날부터 룩셈부르크인들은 전국 규모의 파업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점령당국은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21명의 파업자가 처형당했고 무려 4,186명의 징집반대자 가족이 동유럽 지역으로 강제이주되었다. 15,409명의 징집대상자 가운데 10,211명이 실제로 징집되었

고 그 가운데 2,848명이 전투 중에 사망했다. 1942년 8~9월의 징집반대파업은 이후 점령당국의 무력행사가 일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Fletcher, 1970; Trausch, 1992; Gordon, 1998; Rouso, 1987).

### III. 대독협력과 협력자들

#### 1. 네덜란드

정부 각 부처의 총서기들이 이끄는 네덜란드 행정기구가 강점기에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했다는 것은 곧 총서기를 필두로 행정기구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이 나치 독일의 협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점령당국의 강제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든 강점기에 행정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나치 독일의 지배와 수탈에 일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된 데 따른 것이기도 했다. 독일 점령당국은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점령지 주민들을 통치하고 싶어 했고 총서기들을 위시한 네덜란드의 고위 공무원들은 독일의 직접통치에 따른 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차선책으로 행정업무를 지속하고자 했다.

실제로 총서기들의 업무수행방식은 점령당국에게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점령당국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총서기들의 태도는 “올바르고 충성스러웠”고, 자이스-인크바르트 역시 히틀러에게 보낸 비밀보고서에서 총서기들의 업무수행 덕분에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Durand, 1990; Mason, 1952).

이러한 상황에서 점령당국은 네덜란드인들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구하는데 그 나라의 친나치·파시스트 세력보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고 있는) 전통적인 보수세력에 의존하고자 했다. 이는 앞 장에서 보았듯이 강점기 초기에 자이스-인크바르트가 네덜란드 주민의 자발적 지지를 유도하여 ‘자체 나치화’를 이루려는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국면을 대표하

는 네덜란드인들의 조직은 ‘네덜란드 연합’(Nederlandse Unie)이었다. 이는 1940년 7월말에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결성한 초당적인 연합체로서, 창립선언문에 따르면 그 기본목표는 “점령국에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진 … 모든 애국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이었다. 이 조직은 독일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점령당국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네덜란드 사회의 정치적,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러한 전략은 강점기 초기 네덜란드인들의 여론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이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1941년 2월까지 불과 반년 만에 무려 80만 명이 네덜란드 연합에 가입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급부상하던 토착 파시스트-친나치 정당인 ‘네덜란드 국가 사회주의운동’(Nationaal-Socialistische Beweging der Nederlanden, 이하 NSB)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이스-인크바르트의 ‘자체 나치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그리고 네덜란드 연합이 독일의 소련 침공 이후 동부전선 전투 동원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이 조직은 1941년 12월 해산당한다.(Warmbrunn, 1963; Hirschfeld, 1988) 이후 점령당국은 갈수록 NSB의 협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택했다. NSB는 1931년에 안톤 무세르트(Anton Mussert)가 창설한 네덜란드의 토착 파시스트 정당으로, 1940년 5월 독일의 침공 전에는 미미한 세력의 군소정당에 불과했다. 가장 높았던 득표율이 1935년 주의회 선거에서의 7.9%로, 그나마 이후 계속해서 하락했다(1939년에는 3.9%). 당원 수 역시 1935년에 52,000명까지 되었다가 1940년 봄까지는 다시 29,000명으로 줄었다. NSB는 일찍이 1933년부터 나치식 경례법과 나치식 행사를 모방했고 검은 제복을 착용한 나치식 민병대(Weer Afdelingen, 돌격대)를 창설했다. 당수 무세르트는 1936년 가을에 히틀러를 만난 데 이어 강점기 초기인 1940년 5월말에 자이스-인크바르트를 만났고 점령당국에 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지만 독점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 네덜란드 연합이 해산당한 뒤 무세르트는 히틀러를 만나 충성을 서약했고 이후 NSB는 점령당국에 의해 공인된 ‘유일한 합법정당’이 된다(Durand, 1990; Rousso, 1987).

NSB의 부상이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지방행정이었다. 1941년 10월에만

해도 전국 시장(市長)들 가운데 3%만 차지했던 NSB 소속 시장이 1943년 7월에 이르면 35%에 달하게 되었다. 주위원의 경우 더욱 비율이 높아 1943년에 전국 11개 주 가운데 무려 7개가 NSB 당원에 의해 장악되었다. 1944년 여름에 이르면 절반 이상의 네덜란드 국민이 NSB 시읍면장 치하에 살게 되었다(Durand, 1990; Hirschfeld, 1988).

독일의 나치당과 거의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추구했던 NSB가 점령당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NSB 평당원들은 무장친위대 네덜란드 사단에 대거 입대하여 동부전선에서 독일군과 함께 소련군에 맞서 싸웠고, 암스테르담의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강제 이송하는 업무에도 적극 가담했다(Rouso, 1987).

하지만 이렇듯 적극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NSB의 '유일당'이란 지위에도 불구하고 점령당국은 이 당에 그리 큰 권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나치 독일은 자신과 이데올로기적으로 유사한 정당에 독점적인 권력을 부여하기보다는 총서기들을 위시한 기존의 행정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무세르트는 1942년 12월에 히틀러로부터 '네덜란드 인민의 지도자(Leider)'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지만 이는 명예직에 불과했다. 게다가 NSB는 무세르트의 '민족주의적 파시스트' 세력과 반 토닝겐(Van Tonningen)의 합병지지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독일과의 합병을 추구하는 반 토닝겐 파가 나치 친위대의 후원을 받으며 갈수록 커져 가고 있었다(Durand, 1990; Rouso, 1987).<sup>1</sup>

사실, 전쟁을 수행중인 나치 독일로서는 피점령국의 정치적 협력 못지않게 경제적 협력이 긴요했는데 이러한 부문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친나치 파시스트 세력의 존재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강점기 5년 동안 무려 50~60억 길더에 달하는 액수의 군수품이 네덜란드에서 생산되어 독일군에 제공되었고 독일의 전시경제를 위한 민간소비재 생산액도 30억 길더에 달했다. 네덜란드 전체 공업생산량 가운데 독일의 주문에 따른 것의 비율은 1941년 하반기에 21%, 1942년에 26%, 1943년에 31%, 그리고 1944년 1/4분기에

1. NSB는 강점기의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원수가 10만 명(1942년)을 넘지 않았다.

35%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속업 및 조선업의 경우 그 비율은 특히 높았다. 1941년 하반기에 이미 44%였던 것이 1944년 1/4분기에는 67%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독일 점령당국의 강제 수탈 정도를 말해주는 동시에 네덜란드 기업가들의 협력 정도 역시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가들의 협력이 어느 정도로 강제에 따른 것이고 어느 정도로 자발적인 이윤 추구의 결과인지는 현재로서는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원해서든, 끌려간 것이든 모두 해서 45만 명의 네덜란드 노동자가 독일로 일하러 갔는데 이러한 규모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네덜란드 행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일찍이 1940년 6월 21일에 네덜란드 노동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할 것을 권고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고, 8월 1일에는 독일로 간 자원 노동자의 수가 너무 적은 데 독일 당국이 불만스러워 한다는 공문을 모든 지방당국에 보내기까지 했다.(Mason, 1952) 1942년 3월부터 노동자들을 강제로 독일로 보내는 작업도 네덜란드 당국이 설치한 의무노동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Durand, 1990)

다음으로 눈에 띄는 협력은 군사적 협력이었다.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25,000명 이상의 네덜란드인이 독일 군복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3,700명이 독일군 자원병으로 싸우다가 사망했다. 군사적 협력의 대부분은 ‘네덜란드 군단’(Legioen Nederland)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부대는 독일의 소련 침공 직후에 네덜란드인들에게 반(反)볼셰비키 ‘십자군’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 창설된 것인데, 1943년부터는 독일의 친위대에 편입되어 ‘친위대 네덜란드 사단’으로 재편되었다. 그밖에 ‘국내외의 적들로부터 네덜란드를 방어한다’는 것이 공식 목표인 ‘국방의용군’(Landstorm), ‘국가사회주의 수송부대’(Nationalsozialistisches Kraftfahrkorps, NSKK) 등에도 상당수의 네덜란드인이 입대했던 것으로 보인다.(Mason, 1952)

## 2. 벨기에

네덜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벨기에에서 나치 독일의 지배와 수탈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데 가장 큰 협력을 한 것은 정부 각 부처의 총서기들을 필두로 한 기존의 행정기구 자체였다. 네덜란드와 달리 (마지막 한 달 반을 제외하고는) 독일 자체의 민간행정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벨기에 행정기구에 대한 점령당국의 의존도는 실상 네덜란드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 6월 12일 총서기들이 군 당국과 맺은 협정에 따르면 총서기들은 ‘독일 당국의 명령을 벨기에 법처럼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그 대신 ‘정치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총서기들이 국가 운영을 책임질 것’이고 ‘벨기에의 고위 공무원들은 상당 정도의 자율성을 보유’할 것이었다. 물론 총서기들의 ‘국가 운영권’과 고위 공무원들의 ‘자율성’이란 어디까지나 독일 당국의 통제권 하에서 용인되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군 당국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벨기에 주민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총서기들로서는 나치 독일의 직접 통치나 친나치 파시스트들의 권력 장악보다 자신들이 행정업무를 이끄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협력정책을 수행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점령당국으로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지배와 수탈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대독협력정책은 재계 인사들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 ‘소시에테 제네랄 드 벨지크’(Société générale de Belgique) 은행 총재인 알렉상드르 갈로팽(Alexandre Galopin)이 이끌고 여러 기업가, 재정가들로 구성된 이른바 ‘갈로팽 위원회’가 일찍이 1940년 7월에 독일 전시경제를 위한 벨기에 산업 생산 재개를 결정했던 것이다. 이는 식량과 공업원료 공급을 전적으로 독일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Wijngaert, 2006; Durand, 1990; Warmbrunn, 1993). 그리하여 강점기 4년 동안 벨기에에서 채굴된 니켈과 주석의 80%, 석유생산량의 75~80%가 독일에 인도되었고, 강제로 끌려간 25만 명을 포함해서 모두 45만 명의 노동자가 독일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모의 협력과 수탈은 벨기에

행정당국과 재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ijngaert, 2006; Rousso, 1987).

한편, ‘협력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을 친나치-파시스트 세력의 경우 네덜란드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다. 우선,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 플라망 지역과 불어권인 남부 왈론 지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라망 지역의 경우 ‘벨기에 국가’에서 불어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발하여 플라망의 분리와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들과 아예 나치 독일에의 합병을 주장하는 조직들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전자(前者)는 1930년대에 창설된 Verdinaso(Verbond van Dietsche National-solidaristen, 플랑드르 민족연대연맹)와 VNV(Vlaamsch National Verbond, 플라망 민족연맹)로, 특히 VNV의 세력이 컸다. VNV는 1939년의 총선에서 17석(플라망 유권자의 15%)을 얻은 바 있고 독일군에 점령되기 전부터 나치 독일로부터 비밀리에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점령이 시작된 뒤에는 히틀러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점령당국에 대한 협력을 표명했다. 점령당국도 이 당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간주하여 벨기에 행정기관들에 많은 VNV 당원들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1941년에는 내무부 총서기와 경제부 총서기 자리에 VNV 지도자들을 앉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VNV 측의 기대와는 달리 군 당국은 그 당에 그 이상의 권력을 주지는 않았다. 네덜란드에서처럼 점령당국은 특정 정당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게다가 VNV가 추구한 ‘플라망 독립 국가 건설’이란 목표는 나치 독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 이후 벨기에 내에서도 나치 친위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친위대의 후원을 받는 다른 조직들, 즉 플라망 민족주의에 맞서 게르만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독일 제국에의 합병을 추구하는 플라망 친위대(Vlaamse SS), DeVlag(Deutsch-vlämische Arbeitsgemeinschaft, 독일플라망 사업공동체) 등의 조직들이 보다 힘을 얻었다.

왈론 지역의 경우 또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는 레옹 드그렐(Léon Degrelle)의 렉스(Rex) 당이 1930년대부터 유력한 파시스트 세력이었는데 1936년 5월 총선에서 11.5%의 득표율로 21석을 얻었다가 1939년 선거에서 4석(불어권 유권자의 6%)으로 오히려 줄었고 나치 독일보다는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었다. 강점기 초기에 드그렐은 국왕 레오폴드 3세를 중심으로 세우면서 파시스트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전면적인 대독협력 노선으로 돌아섰다. 1941년 1월에 드그렐은 자신의 논설을 “하일 히틀러!”란 문구로 끝맺었고 히틀러를 ‘유럽의 구원자’로 찬미했다. 하지만 왈론 지역은 플라망 지역에 비해 반독(反獨)감정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드그렐의 렉스 당은 갈수록 힘을 잃었다. 그러나 드그렐 자신은 독일의 소련 침공 이후 독일 국방군 내에 왈론 군단을 창설하고 동부전선에 뛰어들어 전투 중에 몇 차례 부상까지 당하면서 1943년 초에는 ‘나치 친위대 부대장’(Sturmbannführer)의 지위에까지 오른다(Wijngaert, 2006; Durand, 1990).

드그렐의 사례에서 보듯이 친나치 파시스트들의 협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군사적 협력이었다. 일찍이 1940년 8월부터 플라망 친위대는 ‘친위대 서부지역연대’ 자원병 모집운동을 벌였고, VNV는 독일 국방군에 대한 협력을 선호했으나 국방군 측이 거부하는 바람에 1941년 4월부터 ‘친위대 북서지역연대’ 자원병 모집운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모두 6,400명의 플라망인들이 무장친위대에 입대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VNV, 플라망 친위대, DeVlag 등의 구성원이거나 지지자였다. 드그렐이 창설한 왈론 군단은 1943년 6월에 ‘친위대 왈론 의용돌격여단’으로 재편되었는데 병력 규모는 1,600명에 달했다. 이상의 부대들은 주로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에 맞서 싸웠다.

또한 벨기에인들은 점령군 보조부대로서의 경비대들에도 입대했다. 점령당국과 국방군이 창설한 ‘플라망 경비대’에 모두 5,000명의 자원병이 입대했는데 1941~42년에 그 모집은 VNV 성향의 대중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밖에 독일 공군비행장의 경비를 맡은 ‘플라망 경비연대’에는 모두 1,250명이 입대했고, 드그렐의 ‘왈론 경비대’에는 1,500명이 입대했다. VNV, 렉스 당, DeVlag은 독일군 수송부대인 NSKK와 공병대(Todt) 자원병 모집운동도 벌여 NSKK에는 약 4,000명, 공병대에는 약 3,000명의 벨기에인이 각각 입대했다.

최악의 협력은 아마도 경찰업무에 대한 협력이 될 것이다. 우선, 독일군

‘전투지 헌병대’(Feldgendarmerie, FG)의 보조부대로 창설된 ‘보조헌병대’(Hilfsgendarmerie)는 약 1,300명의 ‘민을 만한 벨기에인’들로 구성되어 병역 기피자 체포와 레지스탕스 탄압을 담당했는데 그 대다수는 VNV와 렉스 당의 민병대 대원들이었다. 또 다른 헌병대인 ‘전투지 비밀경찰’(Geheime Feldpolizei, GFP)도 레지스탕스 조직들에 침투하기가 보다 용이한 벨기에인들을 다수 정보부서에 고용했다. 플라망 친위대, DeVlag, 렉스 당은 게슈타포에도 필요한 인원을 제공했으며, 이 세 조직은 레지스탕스 탄압을 위한 일종의 ‘살인부대’를 따로 운용하기도 했다. 또한 플라망 친위대는 벨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검거작전에도 참여했다(Wijngaert, 2006).

### 3.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경우 자국 통치자들의 최고심급기구인 ‘행정위원회’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40년 12월에 해체되었으므로 앞의 두 나라에 비해 기존 행정기구 차원의 협력 정도가 훨씬 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룩셈부르크의 대표적인 협력정당은 1940년 6월 10일에 창설된 ‘재외독일인운동’(VdB)이었다. VdB는 ‘독일문예애호협회’ 회장인 다민 크라첸베르크(Damien Kratzenberg) 교수가 창설한 당으로, ‘조국 독일로의 복귀’, 즉 합병이 기본 목표였다. 7월초에는 80명의 친독 룩셈부르크인들이 ‘피의 목소리를 듣자’고 촉구하면서 룩셈부르크인은 ‘인종상으로는 언어상으로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8월말에는 크라첸베르크의 주도로 각계각층의 명사 32명이 합병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8월 1일에 당원 수가 600명에 불과했던 VdB는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다. 불과 한 달 뒤에 당원수가 10배인 6,000명으로 는 데 이어 1941년 9월에는 69,045명, 그리고 1942년 5월에는 83,500명에 달했던 것이다. 당시 전체인구가 29만 명이었는데 그러면 룩셈부르크인 10명 가운데 3명(28.8%)은 대독협력(주의)자였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역사가들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입당은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독일 점령당국의

협박과 강제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룩셈부르크 국민은 대체로 파시스트여서, 혹은 독일과의 합병을 원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즉 공무원인 경우 해직당하지 않기 위해, 상인이나 기업가인 경우 자신의 상점이나 회사 문을 닫지 않기 위해 입당을 선택했다(Fletcher, 1970; Trausch, 1992).

이러한 점에서 VdB는 앞서 본 네덜란드의 NSB나 벨기에의 VNV와 같은 종류의 조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독협력자들의 규모를 가늠케 하는 보다 적절한 지표는 1941년 9월에 창설된 룩셈부르크 나치당의 당원 수가 될 것이다. 이 수치는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독일군 ‘자원’ 입대자로 추정되는 젊은이의 수인 1,500~2,000명(그중 300명은 친위대 입대)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수치는 독일측 사료에 따른 것으로, ‘자원’ 여부가 자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Trausch, 1992).

#### IV. 해방 후의 대독협력자 처벌 및 숙청

##### 1. 네덜란드

해방 후 네덜란드의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 과정은 우선 부역 혐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로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모두 12~15만 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기에 투옥된 부역혐의자 수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진 최대치는 1945년 10월 15일의 96,044명이다(남성 72,321명, 여성 23,723명). 초기에는 주로 레지스탕스 부대 장교들의 지휘하에 레지스탕스 대원들에 의해 체포가 이루어졌고, 점차 새 정부의 권력기구가 뿌리를 내림에 따라 경찰이 체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46년 1월에 전국의 부역자 수용소는 모두 106곳이나 되었다.

체포해야 할 대상은 1945년 2월 10일의 ‘일반명령’에 의해 엄밀하게 정의되었다. 그 명령에 따르면 2차 대전 이전의 형법에 명시된 ‘국가안전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 적에게 박해받는 이를 넘겨준 자, 점령 상황에 편승하여 치부한 자, NSB 등의 친나치 조직 구성원 및 동조자, 독일의 보조경찰 및 준군사조직의 자원자, 네덜란드 내 독일 조직들의 관리, 친나치 신문사의 간부, 연합군의 전쟁 수행을 방해한 자가 체포 대상에 해당되었다.

해방 직후에, 특히 레지스탕스 대원들에 의해 체포가 이루어지던 초기에 무고한 자나 죄질이 경미한 자도 다수 붙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새 정부는 필요한 경우 ‘재판 전(前) 석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945년 10월까지의 부역자 재판소들에, 그 이후부터는 특별법원의 수석검사들에게, 그리고 1947년 7월부터는 특별법원과 부역자 재판소의 판사들에게도 그러한 석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1945년 10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수석검사들은 약 37,000명의 수감자들을 재판 전에 석방시켰다.

한편, 체포된 자들에 대해서는 재산몰수가 수반되기도 했다. 1944년의 ‘적산(敵産)법령’은 체포된 거의 모든 자들의 전 재산을 일시적으로 몰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하여 약 132,000명 소유의 부동산이 정부에 의해 인수되었고 이는 해당자가 석방되거나 법원이 정한 벌금을 납부한 뒤에 가서야 반환되었다.

이상에서 본 대규모의 체포과정은 기본적으로 강점기 5년간 쌓였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한 결과였지만 동시에 부역혐의자들에 대한 린치나 약식처형 등의 ‘초법적 숙청’을 피하게 하는 효과도 발휘했다. 일부 무고한 자들까지 수용소에 수감된 점이라든가 부역자들이 수용소에 갇힌 동안(특히 해방 직후 몇 달 동안) 그들 재산에 대한 약탈이 벌어진 점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웃 프랑스에서는 약식처형이란 방식의 ‘초법적 숙청’으로 10,000명 안팎의 부역(혐의)자가 실향당했던 반면 네덜란드에서 그러한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대량체포도 한몫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독협력자에 대한 처벌과 숙청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는 ‘사법적 숙청’, 즉 사법기구에 의한 재판이 될 것인데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숙청은 특별재판소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런던의 망명정부는 그러한 특별재판소로 ‘부역자 재판소’(Tribunalen), ‘특별법원’(Bijzondere Gerechtshoven), ‘특별파기원’(Bijzondere Raad van Cassatie), 이렇게 세 종류의 사법기구를 설치했다. 죄

질이 무거운 부역죄나 반역죄는 ‘특별법원’,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기존의 형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범죄는 ‘부역자 재판소’가 각각 담당하고 ‘특별파기원’은 특별법원의 항소기관으로 규정되었다.

특별법원은 1943년 12월 22일 법령으로 규정된 기구로, 해방 후에 기존의 5대 사법관구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었다. 각각의 특별법원은 주요 도시별로 설치된 재판부들로 구성되고 각 재판부는 1명의 재판장과 4명(1947년 7월 31일 이후에는 3명)의 배석판사로 이루어졌다. 배석판사의 절반은 현직 육해군장교이어야 하고 나머지 절반인 민간인 판사는 법학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특별파기원은 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유일한 항소기관으로, 1947년 6월 27일까지는 특별법원 판사들이 허락할 경우에만 항소가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사형선고나 6년 이상의 징역형일 경우 언제나 항소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 4월 1일까지 특별파기원은 모두 3,152건의 항소를 접수했고 그 가운데 1,572건(49.9%)에 대해 특별법원의 선고형량을 파기했다. 그중 1,330건은 특별파기원이 다른 형량을 선고했고 나머지는 특별법원으로 반송했다.

특별법원은 1945년 9월 4일에 첫 문을 열었고 4년 안팎의 활동 끝에 1949년 2월 1일과 1950년 1월 1일 사이에 모두 문을 닫았다. 1948년 11월 1일까지 전국의 5개 특별법원은 총 13,175명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선고형량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특기할 만한 점은 네덜란드 사법제도에서 1873년에 폐지되었던 ‘사형’이 이번에 대독협력자 처벌을 위해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원과 특별파기원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했고 이러한 형량은 대체로 NSB의 수뇌급 지도자들, 네덜란드 군장교 출신의 독일군 자원병,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한 밀고자 등에게만 선고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1948년 11월까지 사형선고는 모두 215명에게 내려졌지만 1950년 12월까지 특별파기원에서 사형선고가 기각된 사람들의 수를 제하면 138명이었고 그 가운데 36명만 실제로 처형되었다.

한편, 특별법원 판사들은 사형, 징역, 벌금형, 재산몰수형 외에 권리박탈형도 선고했다. 특별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 거의 모두가 투표권과 피선거

〈표 1〉 네덜란드 특별법원의 선고형량 분포(단위: 명)

사형		215
징역	종신형	88
	5년 이상	5,276
	5년 미만	6,173
벌금		48
조건부 선고		733
무죄		642

자료: Mason(1952), p. 68.

권을 박탈당했고 대부분의 부역자(특히 독일군 자원병)가 군복무 역시 금지되었다. 유죄선고를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 복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밖에 교원, 법조인, 언론인, 의사, 약사, 간호사, 건설계약자, 은행원, 부동산업자, 출판인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부 부역자들에게 금지되었다. 이러한 권리 박탈의 기간은,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로 징역기간 더하기 5년이었고 징역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최소 3년, 최대 종신이었다. 또한 무장친위대, 네덜란드 군단, 국방의용군, 국가사회주의 수송부대(NSKK), 독일군 공병대(Todt), 독일의 치안경찰(Ordnungspolizei) 등에 들어가 활동한 자들과 그 아내들은 아예 국적이 박탈되었다. 약 6만 명의 네덜란드인이 그러한 이유로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들 모두 1951년 4월의 법으로 다시 국적을 되찾았다.

특별법원과 특별파기원에 이어 세 번째 유형의 특별재판소에 해당하는 ‘부역자 재판소’는 워낙 ‘불충한 태도’를 다룰 기구로 구상되었던 것이지만 특별법원이 다룰 ‘중죄’와 ‘불충한 태도’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점차 특별법원의 하부기관이 되어갔다. 부역자 재판소는 전국에 모두 19개가 설치되었고 각 재판소는 도시별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재판부들로 구성되었다. 각 재판부는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었는데 재판장과 달리 배석판사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었고 거의 언제나 레지스탕스 출신이었다. 5곳의 특별법원 각각에 1명의 수석검사가 배속되었던 것과 달리 부역자 재판소에는 검사가 없었고 판사들이 검사 역할까지

담당했다. 항소제 역시 없었지만 대신에 부역자 재판소의 판결은, 전국의 5개 사법관구별로 1명씩 있는 고등법무관(Hoge Autoriteit)이 동의한 뒤에 가서야 발효되었다. 고등법무관은 재판소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해당 재판소에 재심을 요구했다.

1944년 9월 17일에 발표된 부역자 재판소 포고령의 제1조에 따르면 처벌 대상은 적이나 그 협력자들을 도운 자, 적에게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한 자, NSB 등의 국가사회주의·파시즘 조직의 구성원, 그러한 조직을 위해 일한 자, 국가사회주의 혹은 파시즘의 정신상태를 보인 자, 적의 조치들이나 점령상황으로 득을 본 자,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국왕이 내린 포고령에 불복한 자 등이었다.

1945년 7월 25일에 첫 문을 연 부역자 재판소(와 그 뒤를 이은 치안판사)는 1948년 11월 1일까지 모두 47,266명에게 유죄선고를 내렸는데 그 형량의 분포는 <표 2>와 같다.(Mason, 1952)<sup>2</sup>

한편, 해방 직후에 부역 혐의자가 너무 많다는 상황은 이상에서 본 특별법원과 부역자 재판소들만으로 적절한 시한 내에 모두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 26일의 법령으로 ‘법원외(外) 면소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전국에서 5명의 수석검사가 특별법원이나 부역자 재

<표 2> 네덜란드 부역자 재판소의 선고형량 분포

징역	10년	531
	5년 이상 10년 미만	1,303
	1년 이상 5년 미만	28,151
	1년 미만	5,630
재산 몰수		11,489
권리 박탈		37,493

자료: Mason(1952), p. 77.

2. 징역형과 재산몰수형, 권리박탈형은 동일한 피고에게 중복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각 선고형량의 총합은 47,266명을 넘는다. 또한 부역자 재판소는 1948년 6월 1일에 문을 닫았으므로 이 수치에는 그 뒤에 치안판사들이 선고한 약 200건이 포함되어 있다(Mason, 1952).

판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들에 대해 면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였다. 해당 피의자의 기소사유가 근거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조건 면소’ 처분이 내려졌고, 재판까지 받기에는 경미하지만 ‘무조건 면소’ 처분을 받을 정도로 경미하지는 않다면 ‘조건부 면소’ 처분이 내려졌다. ‘조건부 면소’란 특정한 의무나 금지, 권리박탈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소가 해제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조건’들로는 보호관찰을 받을 의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할 의무, 벌금 납부 의무, 특정 물품 인도 의무, 정당가입 금지, 정치집회 참가 금지, 투표권과 피선거권 박탈, 공직 보유권 박탈 등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최대 6년까지 지속되었고 권리박탈의 경우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어느 한 조건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면소는 취소되고 다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될 것이었다. 엄청난 수의 부역혐의자가 이러한 제도에 따라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최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상에서 본 ‘사법적 숙청’이 전후(戰後) 대독협력자 처벌의 핵심적 형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처벌과 숙청은 사법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회 각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정부 주도로 ‘숙청위원회’들이 구성되고 대독협력자들에게 각종 징계가 내려졌던 것이다.

우선, 공무원들의 경우 1945년 8월 2일 법령에 따라 ‘정부 직원 숙청’의 대상과 방식이 규정되었다. 이 법령은 일반 공무원만이 아니라 국영철도직원, 가스·전기·수도 등의 공사(公社) 직원, 국공립학교 교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사립학교의 교원, 상업회의소 직원, 자선기관 직원 등도 관할대상에 포함시켰다. 징계대상은 “왕국이나 여왕”에 불충한 자, 국가사회주의적 정신 상태를 보인 자, 국가 재건에 충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자, 독일군의 점령과 관련하여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자로 규정되었다.

징계의 종류는 구두 혹은 서면의 견책에서부터 임금의 전액 혹은 부분 지급 중지, 근무지 이동, 승진 금지, 강등 그리고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1945년 8월의 법령은 정부 직원 숙청위원회들의 설치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숙청 방식을 정할 권한이 부여되었고, 단지 장관이 해당 공직자를 해임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는 정도로만 규정되

었다. 해임 이외의 징계조치들은 대체로 장관들이 해당 주(州)나 시읍면 관리들에게 위임했다.(Mason, 1952)

공무원 숙청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단지, 1947년 말까지 전국 시읍면장 925명 가운데 509명(55%)과 18,000명의 경찰관 가운데 2,487명(13.8%)이 해임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Mason, 1952; Romijn, 2000).

판사들의 경우 1945년 10월 26일 법령에 따라 ‘고등사법단’(Hooge College voor de Rechterlijke Macht)이라는 이름의 숙청담당기구가 따로 설치되었다. 강점기 전에 임용된 판사들은 왕국이나 왕에게 불충하거나 국가 사회주의적 정신상태를 보이거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네덜란드 사법부에 해를 끼친 경우 법무부장관이 일시 정직시킬 수 있었고 해임, 승진불가, 강등 등 공식 징계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고등사법단에 있었다. 반면 강점기에 임용된 판사는 법무장관이 바로 해임할 수 있었고 고등사법단은 이에 대해 조언만 할 수 있었다.

사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한 숙청은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구성된 숙청위원회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영진에 대한 숙청은 정부가 조직한 숙청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업장별 숙청위는 해방 직후에 대부분의 공장 대기업들에서 만들어졌고 레지스탕스 경력을 보유한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숙청위는 고용주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대체로 해고)를 ‘권고’했고 이 권고는 거의 언제나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 숙청위원회는 1945년 9월 3일 법령에 따라 조직되었다. “사업체 경영진에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혹은 자신의 과오로 ... 적을 도왔거나, 적에 맞선 국가에 해를 입혔거나, 적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네덜란드의 이익에 해를 입힌” 자가 징계대상이 되었다. 징계방식은 경영진 직위 박탈이었고 그 기간은 최대 10년이었다. 1명의 법조인 주심사관과 2명의 부심사관으로 구성되는 숙청위원회가 1947년 1월까지 산업부문별로 모두 50개 설치되었다. 이 숙청위들이 징계 여부를 결정했지만 그 결정은 5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중앙숙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발효되었다. 모든 숙청위들이 1948년에 활동을 종결했고 중앙숙청위는 1949년에 업무를 종결지었다.

한편, 언론숙청위원회 역시 1945년에 설치되었고 그 심사관은 레지스탕스 출신의 언론인과 법조인들로 구성되었다. 징계방식은 기자직 종사 금지와 언론사 경영진 직위 박탈이었고 그 기간은 최대 20년이었다. 또한 신문 발행이 금지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인쇄소가 일시 몰수되기도 했다.

끝으로, 문화계에서는 해방 직후에 문학, 미술, 음악, 연극-발레-영화, 건축, 연예, 이렇게 6개 부문에서 숙청위원회들이 설치되었다. 각 숙청위는 1명의 법조인 주심사관과 4명의 부심사관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심사관은 해당 부문 예술가이거나 예술단체회원이었고 주심사관과 부심사관 모두 대체로 레지스탕스 출신이었다. 징계방식은 상연, 전시, 출판, 발표 등 해당 부문의 공개적 예술활동을 일시 금지하는 것이었다. 문화계 숙청은 1946년 4월에 가서야 정부 법령으로 공식화되었는데 기존의 징계 방식 외에 2,000길더 이하의 벌금과 견책이 추가되었다.

그밖에 의사, 변호사, 장의사, 대학생, 교회 등 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자체적인 숙청기구가 설치되었다. 농민과 몇몇 범주의 중소기업가들만이 숙청기구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Mason, 1952)

## 2. 벨기에

네덜란드에서처럼 벨기에 역시 대독협력자에 대한 약식처형이라는 형태의 ‘초법적 숙청’은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프랑스에서는 해방 전후에 무려 10,000명 안팎의 부역(혐의)자가 약식처형으로 사망했던 반면 벨기에에서는 현재까지 단지 24명의 약식처형 사례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해방이 이루어진 방식과 기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44년 6월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해방이 여러 달에 걸친 전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내 레지스탕스 부대의 역할도 작지 않았던 반면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해방이 극히 짧은 기간(벨기에에는 1944년 9월 초, 네덜란드에는 1945년 5월 초)에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레지스탕스가 개입할 여지도 작았던 것이다.

초법적 숙청이 별로 없었던 만큼 대독협력자 숙청에서 사법적 숙청과 행정숙청(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합법적 숙청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더 더욱 컸다. 우선, ‘사법적 숙청’, 즉 대독협력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네덜란드의 경우 민간특별재판소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반면 벨기에에서는 군사재판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벨기에의 군사재판소는 군법회의(Conseil de guerre)와 군사법원(Cour militaire)으로 나뉘는데 군법회의가 ‘국가의 대외적 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1심재판소라면 군사법원은 그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군법회의는 전국에 모두 21개가 설치되었고 군사법원은 단 1개였다. 실제 재판은 재판부들, 즉 군법회의를 구성하는 전국 134개의 재판부와 군사법원의 24개 재판부에서 이루어졌다. 각 재판부는 2명의 군 판사와 3명의 민간인 판사로 구성되었고 재판장은 민간인 판사가 담당했다. 21개의 군법회의 중 10개가 1944년 9월부터 설치되거나 활동을 재개했고 1946년 2월까지는 모두 문을 열었으며 1947년 5~6월에 6개의 군법회의가 문을 닫은 것을 필두로 1949년 10월 15일까지는 모두 16개가 문을 닫았고 1950년 7월 31일에 2개가 더 문을 닫았다.

1944년 9월부터 1949년 말까지 군 심사관들에게 모두 728,866명에 대한 부역혐의자 기록이 제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167,520명의 기록은 중복 등의 이유로 폐기되었고 남은 기록 가운데 최종적으로 405,067명의 기록이 ‘국가 대외안전침해죄’를 저지른 자의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중 288,101명(71.1%)의 기록은 기각되었고 59,712명(14.7%)은 면소되었으며 나머지 57,254명(14.1%)만이 기소되었다.

기소된 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소들의 선고형량 분포는 <표 3>과 같다. 또한 징역형에는 종종 다른 형벌들이 수반되기도 했다. 즉, 경우에 따라 벌금형, 재산몰수, 석방 뒤의 보호관찰, 국적박탈, 일부 권리의 박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보호관찰’에는 2~5년 동안 지정된 구역에 거주할 의무, 공공시위 참가금지,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이나 시장 앞에 출두할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벨기에 국적박탈은 총 3,165명에게 선고되었다. ‘권리박탈’의 경우 1944년 5월 6일 명령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 모두에 대해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권리들의 박탈이 규정되었다가 1945

&lt;표 3&gt; 벨기에 군사재판소의 선고형량 분포

사형		2,940 (결석재판: 1,693)	처형	242
장역	종신형	2,340 (결석: 501)		
	15~20년	3,366 (411)		
	10~15년	3,253 (375)		
	5~10년	9,844 (667)		
	5년 미만	30,750 (506)		
벌금		500여 명		

자료: Huyse et al.(1993), p. 28.

년 9월 19일 명령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자에게로 확대되었다.(Huyse et al., 1993)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군 심사관이 해당 부역혐의자에게 ‘공민권 박탈’을 명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공민재판부’가, 네덜란드에서는 ‘부역자 재판소’가 주로 선고했던 이 형벌을 벨기에에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군 심사관이 직접 부과했던 것이다. 1945년 9월 19일 명령에 따라 총 608명의 군 심사관들이 모두 43,093명의 부역혐의자들로부터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권리들 전체 혹은 일부’를 박탈했다. 공민권이 박탈된 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 의사, 교원, 언론인, 성직자가 될 수 없었고 모든 조직의 운영진이나 경영진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재판소에서의 형사처벌과 달리 사면대상이 되지 않았고 네덜란드의 경우와 달리 박탈기간이 대부분 종신이었다. 단, 군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1심민간재판소나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항소율은 지역별로 75~78%에 달했고 항소심에서 66%는 공민권 박탈이 취소되었으며 24%는 박탈 조건이 완화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독협력의 정도가 더 심했던 플라망 지역과 수도 브뤼셀이 왈론 지역보다 공민권 박탈률이 더 높았다. 플라망이 주민 1,000명당 5.6명, 브뤼셀이 5.4명이었던 데 비해 왈론은 3.3명이었던 것이다(Huyse et al., 1993; Huyse, 2000).

한편, 행정숙청, 즉 부역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1940년 5월 16일 이후의 거의 모든 행정조치를 무효화하는 1944년 5월 5일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이 명령에 따라 강점기에 임명된 모든 공직자 수천 명이 해임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1944년 5월 8일 명령은 강점기 이전에 임용된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민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일단 6개월간 정직되었고 1946년 12월까지(강점기에 임명되어 자동해직된 자들 말고도) 모두 118명의 시장, 199명의 주(州)의원, 1,364명의 시의원이 강점기의 태도를 이유로 해임되었다. 또한 1944년 9월 25일 섭정령에서는 정부의 각 부처, 반(半)공공단체, 국립고등교육기관, 왕립 아카데미 등에 숙청위원회를 설치할 것이 규정되었다. 각 숙청위는 피심사자들에게 대한 조사 끝에 견책, 경고, 유급 혹은 무급의 정직, 해임 등의 징계안을 최종결정권자인 장관이나 지사 등에게 제출했다. 행정숙청은 사법적 숙청의 결과로 수행되기도 했다. 군사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군 심사관에 의해 공민권이 박탈된 공무원은 자동적으로 해임되었다. 그 역도 성립했다. 즉, 행정숙청으로 해임된 자는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권리들도 박탈당했다.

이상의 조치들을 통해 모두 10,600명 이상의 공직자가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적어도 1,300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7,300명은 해임되었다. 이는 강점기에 임명되어서 해방 직후 자동적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벨기에의 대독협력자 처벌은 이상에서 살펴본 사법적 숙청이나 행정숙청 외에 ‘공민증 발급 거부’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민증 발급권한은 각 도시의 시장들과 일부 경우 경찰서장들에게 있었는데 대독협력자들에게는 이러한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1945년 9월 18일 내무부장관이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공민증 발급이 금지된 범주들의 범위는 꽤 넓었다. 즉, 군사재판소에서 유죄선고 받은 자, 친독단체 가입자, 공민권을 박탈당한 공직자,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군사재판소에 회부되거나 법무부장관 지시로 구금된 자, 독일로 일하러 가서 거기서 친독일적 태도를 보인 자 모두가 공민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공민증이 없을 경우에는 국립대학, 간호사 양성소 등에 입학할 수 없었고 정부가 개최한 대회나

시험에 참가할 수 없었으며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운전기사도 고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공민증 발급 거부에 대해 ‘국가가 내부의 적을 스스로 양산한다’는 반발 여론이 일자 결국 1950년 8월 10일에 공민증 발급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끝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의 자체 숙청도 네덜란드에서처럼 매우 다양한 부문들에서 폭넓게 이루어졌다. 해방 직후인 1944년 9월 8일에 벨기에 사회당이 부역 당원을 숙청하기 위해 ‘전국명예심사회의’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9월 30일에는 증권거래소가 숙청위원회를 구성했고 10월 12일에는 브뤼셀 변호사회가 ‘부적격’ 변호사에 대한 첫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밖에도 1944년 9~12월에 벨기에 전국언론인협회, 불어작가클럽, 플라망 작가협회, 벨기에 서적상조합, 전국물리교육센터, 벨기에 올림픽위원회, 벨기에 왕립테니스연맹, 벨기에 축구연합, 벨기에 자전거연맹, 벨기에 복서연맹 등에서 자체 숙청위원회를 조직하거나 부역회원들을 제명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숙청은 사법적 숙청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많은 조직들이 예심이 진행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회원들을 제명했던 것이다. 그 역이 성립하기도 했다. 의사, 약사, 증권증개인의 경우 자신의 직업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는 1945년 9월 19일 명령에 따라 일부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Huyse et al., 1993)

### 3.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달리 룩셈부르크에서의 대독협력자 숙청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룩셈부르크에서도 1944년 9월 9~11일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고 나서 런던의 망명정부가 복귀했고 그 정부에 의해 대독협력자 처벌과 숙청이 주도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단지, 사법적 숙청에 관한 몇몇 수치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즉, 해방 후 부역혐의자 약 9,500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5,100명이 강점기의 태도나 행위를 이유로 투옥되었으며 그 가운데 2,27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12명이었고 그중 8명이 처형되었다(Trausch, 1992).

## V. 맺음말

베네룩스 3국에 대한 나치 독일의 지배구조는 공식적으로 모두 ‘직접통치’ 형태였지만 실상은 상당 정도로 각국의 기존 행정기구에 의존했다. 세 나라 모두 공식적으로 자국의 중앙정부가 국내에 없다뿐이지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총서기가 이끄는 행정기구가, 룩셈부르크에서는 적어도 1940년 12월까지 총서기가 주재하는 ‘행정위원회’가 각각 존속했던 것이다. 나치 독일로서는 그렇게 해당국 자체의 기존 행정기구를 활용하는 편이 (완전한 직접통치에 비해) 비용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훨씬 유리하고 주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것이었다.

차이로 말하자면, 합병된 룩셈부르크보다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그리고 ‘제국위원’ 휘하의 민간당국이 들어선 네덜란드보다는 점령군 당국이 유지된 벨기에가 해당국 행정기구에 의존하는 정도가 좀더 컸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점령정책의 추이 역시 세 나라 모두 비교적 온건하고 관대한 통치방식에서 강압적이고 노골적인 지배형태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벨기에는 비교적 이른 1940년 10월 이후, 네덜란드는 1941년 2월 이후, 룩셈부르크는 1942년 8월 이후 각각 그러한 변화를 보였고,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각각 유대인 대량검거와 자국 청년 대량징집에 대한 대규모 항의파업이 그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독일의 소련 침공(1941년 6월), 각국 무장 레지스탕스 운동의 발전, 갈수록 불리해지는 독일군의 전황, 그리고 각 점령지에서의 친위대 세력의 강화 등 모든 사태 전개가 점령당국의 역압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점령당국은 점점 더 해당국의 친나치 파시스트 세력, 즉 네덜란드의 NSB나 벨기에의 VNV와 렉스 당 등의 협력에 의존하면서 이들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은 이들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권력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점령당국은, 해당국 주민들의 지지를 그다지 많이 받지 못하고 정치적 야심

이 위험할 정도로 커보이는 이들보다는 총서기들 이하의 기존 정치세력과 행정기구 및 기존의 경제 엘리트들에게 의존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는 곧, 친나치 파시스트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이 가장 눈에 띄는 협력이기는 했지만 나치 독일의 지배와 수탈을 순탄하게 유지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결국 그러한 세력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경제세력이었음을 의미한다. 총서기들을 필두로 한 정계 인사들은 나치 독일의 완전한 직접통치나 자국 파시스트들의 권력 장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재계 인사들은 대량실업사태나 원료 및 식량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각각 자발적 대독협력이라는 ‘차악(次惡)’ 정책을 선택했던 것이다.

세 나라 모두 1944년 9월(벨기에와 룩셈부르크) 혹은 1945년 5월(네덜란드)에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고 런던의 망명정부가 복귀함에 따라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이 진행되었는데 우선, 특기할 만한 점은 인근 프랑스와 달리 부역(혐의)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약식처형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해방전투기간이 극히 짧았고 따라서 국내 레지스탕스 부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 4>에서 보듯이 대독협력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정도는 결코 낮지 않았다. 인구당 실형 선고율과 징역 선고율, 공민권박탈형 선고율 모두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프랑스보다 훨씬 높았고 오직 처형률만 네덜란드가 프랑스보다 낮았던 것이다. 룩셈부르크 역시 실형선고율과 처형률 모두 프랑스보다 높았다. 대독협력자 숙청의 핵심적 형태라 할 ‘사법적 숙청’ 면에서 베네룩스 3국이 강도 높은 숙청 사례로 유명한 프랑스보다도 더 철저하고 엄격했던 셈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프랑스의 경우 1942년 10월까지의 국토의 절반 정도(비시 프랑스)가 점령되지 않았던 반면 베네룩스 3국은 처음부터 영토 전체가 점령되었다는 조건 자체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 대독협력자의 비율 자체가 아마도 베네룩스 3국 쪽이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겠지만 해방 전후의 대규모 약식처형 현상의 유무(有無) 역시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약식처형 형태의 ‘초법적 숙청’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베네룩스 3국의 경우 그만큼 합법적, 사법적 숙청의 강도가 높았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이

〈표 3〉 인구 10만 명당 선고형량의 각국 비교

	실형 선고 <sup>3</sup>	징역 선고 <sup>4</sup>	공민권박탈 <sup>5</sup>	처형 <sup>6</sup>
네덜란드	1,216	419	602	0.4
벨기에	963	596	265	2.9
룩셈부르크	784	-	-	2.8
노르웨이	-	633	-	0.8
덴마크	-	374	-	1.2
프랑스	309	94	119	1.9

미 10,000명 안팎이나 되는 부역(혐의)자가 초법적 숙청을 통해 사망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후의 사법처리가 덜 엄격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대독협력자 숙청이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곧 숙청이 언제나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죄질의 대독협력행위이더라도 해방 직후의 선고형량이 몇 년 뒤의 형량보다 훨씬 무거웠다는 점이라든가 경제적 부역이 다른 종류의 부역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은 프랑스에서만 아니라 베네룩스 3국에서도 반복되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네덜란드에서의 해방 직후 대량체포현상이라든가 벨기에에서의 공민증 발급거부관행 같은 사례들은 과도한 숙청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곧 ‘재판 전 석방’ 조치와 ‘법원외 면소제’가 도입되어 수감자가 대거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초기에 상당수의 무고한(혹은 죄질이 극히 경미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체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강점기 4~5년간의 무자비한 억압과 수탈에 억눌려온 불만과 분노가 갑자기 폭발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몇몇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3. Huyse(2000), p. 161.

4. Novick(1968), p. 187.

5. Huyse(2000), p. 161. 이 수치는 주형(主刑)으로서의 공민권박탈형만을 집계한 것이다.

6. Rousso(1987), p. 95. 이는 정식 재판에서 사형선고 받은 뒤의 처형만을 집계한 것이다.

차례의 큰 사법처리 물결과 사회 각 부문에서의 자체 숙청 물결을 통해 수치스런 과거사에 대한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Auschwitz. *La Solution finale*. 1998. *Les Collections de L'Histoire*. n° 3. octobre.
- Durand, Yves. 1990. *Le nouvel ordre européen nazi (1938-1945)*. Bruxelles: Éd. Complexe.
- Eismann, Gaël et Stefan Martens, dir. 2007. *Occupation et répression militaire allemandes 1939-1945*. Paris: Éd. Autrement.
- Fletcher, Willard Allen. 1970. "The German Administration in Luxemburg 1940-1942: Toward a 'De Facto' Annexation." *The Historical Journal* 13(3). September. pp. 533-544.
- Gordon, Bertram M., ed. 1998. *Historical Dictionary of World War II France*. Westport: Greenwood Press.
- Hirschfeld, Gerhard. 1988. *Nazi Rule and Dutch Collaboration: the Netherlands under German Occupation, 1940-1945*. Oxford/New York: Berg.
- Huyse, Luc et al. 1993. *La répression des collaborations 1942-1952*. Un passé toujours présent. Bruxelles: CRISP.
- \_\_\_\_\_. 2000.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Political Actor in Regime Transitions: The Case of Belgium, 1944-50." István Deák et al., ed. *The Politics of Retribution i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57-172.
- Kreins, Jean-Marie. 1996. *Histoire du Luxembourg: des origines à nos jours*. Paris: PUF.
- Mason, Henry L. 1952. *The Purge of Dutch Quislings: Emergency Justice in the Netherlands*. The Hague: Martinus Nijhoff.
- Novick, Peter. 1968. *The Resistance versus Vichy. The Purge of Collaborators in Liberated Fr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omijn, Peter. 2000. "'Restoration of Confidence': The Purge of Local Government in the Netherlands as a Problem of Postwar Reconstruction." István Deák et al., ed. *The Politics of Retribution i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73-193.
- Rouso, Henry. 1987. *La collaboration*. Paris: M.A. Editions.
- Trausch, Gilbert. 1992. *Histoire du Luxembourg*. Paris: Hatier.
- Warmbrunn, Werner. 1963. *The Dutch under German Occupation 1940-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The German Occupation of Belgium 1940-1944*. New York: Peter Lang.

Wijngaert, Mark Van den. 2006. "Guerre et occupation (1940-1944)." Michel Dumoulin et al., dir. *Nouvelle Histoire de Belgique*. Vol. 2: 1905-1950. Bruxelles: Éd. Complexe. pp. 11-100.

## Collaboration in the Benelux Countries under German Occupation and Post-liberation Purge

Lee, Yong Woo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zi rule over the Benelux countries was formally 'direct', but actually it depended on their local administrations to a considerable extent. It was more advantageous in cost and efficiency for Nazi Germany to make use of them than to cling to direct rule. The Nazi occupation policy in these three countries changed its disposition over time from moderate and generous to oppressive and coercive one. As a result, German authorities attempted to strengthen pro-Nazi or fascist movements and their leaders in these countries. Nevertheless, they did not give greater power to these forces, because they thought it much more efficient to depend on the existing politico-economic elite than the fascists. Therefore, though the ideological, political and military collaboration of the latter was most noticeable, it was the existing elite that contributed most to maintaining the Nazi rule and its plunder of the countries.

In all these countries, after the liberation, the collaborators were purged in many ways. Though there were no mass summary executions unlike in France, judicial purges in the Benelux countries were more thorough and severe than in France. Even though their purges were not always impartial, they were quite conducive to the cause of justice by impelling waves of judicial purge and self-purges in most of the significant social sections.

Key Words: Benelux Countries, Collaboration, Nazi Germany, Purge

이용우. 서울대학교 강사  
151-755 서울 관악구 봉천 3동 관악현대아파트 103동 304호  
Tel\_016 9344 3384 e-mail: greve@hanmail.net

